

自治團體長選舉早期實施促求決議案

의안 번호	10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년 9. 16

발의자 : 崔俊和議員外6人

1. 주 문

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한대로 조기실시할 것을 촉구결의함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②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이 공포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것인 바 지금껏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국민간의 준법정신이 해이되어 불신사회로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장 선거를 조기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촉구결의하고자 함.